



제271회 임시회
2008. 6.2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발 의 자** : 심홍섭 의원 외 6인

□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8년 6월 13일

○ 회부일자 : 2008년 6월 16일

□ **제안이유**

가.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생 의 수련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연수신청서” 와 “시설사용·연수결정통지서” 서식을 조례에 명시(제6조)

나.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제10조)

□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학생(초.중.고.대학) 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설립동기 및 조례제정 사유>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지난 1980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괴산군 청천면 소재 송면지역에 설치(1982년)한 후 충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중인 1999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민간위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음해인 2000년 10월 동 조례를 제정,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음.

<타시도 자연학습원 사용료 기준현황>

도별 (개원년도)	운영 형태	총운영비 (지원위탁금)	사 용 료(원)						비고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숙박비	수련비	숙박비	수련비	숙박비	수련비	
충북 (82)	위탁	724백만원 (100백만원)	4,700	8,400	5,000	8,500	5,300	8,600	성인 숙박비 8,000
강원 (85)	위탁	530백만원 (200백만원)	4,200	6,600	6,800	6,600	6,800	6,600	
전북 (82)	위탁	482백만원 (295백만원)	6,000	10,000	6,000	10,000	6,000	10,000	
전남 (82)	위탁	215백만원 (120백만원)	4,500	10,700	4,500	11,100	4,500	11,300	
위탁운영도 평균금액			4,850	8,950	5,575	9,050	5,650	9,125	

※ 우리도와 유사한 타 시.도사례

붙임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